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43 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한지아·서범수·이인선

진종오 · 장동혁 · 박정하

조은희 · 김형동 · 김승수

정성국 · 우재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 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다만,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·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.

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 적이 있음.

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

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54조제3항 중 "제58조제1호·제3호·제4호"를 "제58조제1호·제3호·제4호, 같은 조 제5호(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)"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·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과징금) ①・② (생 략)	제54조(과징금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제58</u>	③ <u>제58</u>
조제1호・제3호・제4호 또는	조제1호・제3호・제4호, 같은
제59조제6호 · 제8호에 해당하	조 제5호(제30조제8호를 위반
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	하는 행위에 한정한다)
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	
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・변조	
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	
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	
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	
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	
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	
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	
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과징금을 부과 · 징수하지	
아니할 수 있다.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